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62호

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35조제3항제14호나목에 따라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·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1. 07.

우정사업본부장

우정사업 부동산 관리·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

1. 위탁법인 :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

2. 위탁업무

가. 우정사업 부동산 컨설팅 및 그 부대업무
나.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및 그 부대업무
다.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(청사, 금융창구, 안내) 및 그 부대업무
라.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 및 대부업무 지원
마. 기타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련 부대업무 등

부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6-29호(2006.12.28.)는 폐지한다.